

지방재정 손실비리 방지를 위한 보조금 지원 시설 특정감사 결과보고

감사 목적

- ◆ 민간보조 시설의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지도·점검 및 감사를 통해 향후 보조금 관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부패 운동의 민간 확산을 도모.

감사 개요

1. 감사 근거

-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
-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(자체감사의 종류)
- 「인천광역시연수구 자체감사규칙」 제5조(감사의 범위)
- 2015년 감사 종합계획 【감사실-7411(2014.12.15)】

2. 감사 개요

- 감사기간 : 2015. 7. 27. ~ 7. 30. (4일간)
- 감사대상 : ○○○○복지관(주관부서:복지정책과)
- 감사범위 : 2013. 7. 1. ~ 2015. 6. 30.
- 감사 중점사항
 - 보조금 집행 및 관리 실태
 -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 및 합법성 등
- 감사반원 : 1개반 2명

감사 결과

1. 총 평

○ ○ ○ ○ ○ 복지관 특정감사 실시 배경은

부정부패 척결 5대 핵심분야(지방재정 손실 비리) 특정감사 실시 일환과 동시에 1993년에 개관하여 연간 약 11억 이상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임에도, 개관 후 한번도 자체 감사를 실시한 바 없으므로 연수구 내 3개 복지관에 대하여 연차별로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재정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.

○ 이번 감사에서

- ○ ○ ○ ○ ○ 복지관에서는 대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복지관 운영의 목적과 관련 규정에 맞게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,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
- 기관운영비 집행 부적정 등 위법부당사례 6건을 적발하여 행정상 조치(시정4, 주의2), 재정상 조치(환수 400,000원/ 1건), 신분상조치(자체징계 2명) 처분 요구함.

2. 지적사항 목록

연번	지 적 사 항	처분내역			비고
		행정상	재정상	신분상	
1	법인전입금 지원 부적정 - 2013년 9,800천원 2014년 7,000천원 미지원 - 2015년도 7.2일 20,000천원 지원) ⇒2015.6.30 2013, 2014년미지원액 16,800천원 입금	시정		자체징계 2명 (관장)	2013~2015년도 지원액 연간 40,000천원
2	기관운영비 집행 부적정 (경조사비 13건 930천원, 명절선물 7건6,345천원)	시정	400 천원 환수		상품권 400,000원 지급명단 없음
3	직책보조비 집행 부적정 (9건 949천원)	시정			
4	도시락배달 부식업체 선정 부적정	시정			
5	사업 수익(실비이용료) 사용 부적정	주의			
6	관용차량 사용 부적정	주의			

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

1. 법인전입금 지원 부적정

- 2013.4.29. ○○○○복지관 위탁운영 계약서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40,000,000원의 법인 부담금을 지원하며,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.
- 그러나 ○○○○복지관에서는 2013년도에는 3월, 8월, 12월에 총 30,200,000원이 지원되어 9,800,000원이 지원되지 않았으며, 2014년도에는 8월, 11월, 12월에 총 33,000,000원이 지원되어 7,000,000원이 지원되지 않았으며, 2015년도에는 7월에 20,000,000원이 지원되었다. 2013년, 2014년 미지원 금액 16,800,000원은 2015.6.30.일에 지원되어 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상태로 시설 운영비(기관운영비, 직책보조비, 기타운영비 등)를 집행 하였다.

▶▶ 처분요구 : 행정상 시정, 신분상 자체징계(관장 2명), 기관경고

2. 기관운영비 지출 부적정

1. 경조사비 집행에 관한 사항

-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 따르면 같은 관서 내에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·부의금은 해당 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- 그러나 ○○○○복지관에서는 지급대상 범위가 아닌 타 복지관장, 시설운영위원, 봉사자 등에게 총 10건 630,000원을 지출하였으며, 직원 3명에게 각각 100,000원의 화환을 구입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다.

2. 명절선물 지급에 관한 사항

-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하며, 명절 선물의 경우는 소속 상근직원(공익근무요원 가능)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.

- 그러나 ○○○○복지관에서는 지급대상 범위가 아닌 운영위원, 자원봉사자, 유관기관 등에게 6,345,420원의 명절선물을 구입하여 지급하였으며, 그 중 400,000원의 상품권에 대하여는 지급대상자 명단 없이 집행하였다.

▶▶ 처분요구 : 행정상 시정, 재정상 환수 400,000원

3. 직책보조비 지출 부적정

- 「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」 제10조에 [별표6] 복지관 등 시설회계세출 예산 과목구분 의하면 직책보조비는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예산으로 중간관리자에 월 200,000원을 편성하고 있다.
- 그러나 ○○○○복지관에서는 유관기관 업무 협의 등 기관운영비 성격의 예산으로 총 9건에 949,000원을 사용하고, 직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.

▶▶ 처분요구 : 행정상 시정

4. 도시락배달 사업 부식 납품업체 선정 부적정

- 「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 제30조의2(계약의 원칙)에 의거 계약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야 하고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9조(계약의 방법)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.
-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(수익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)에 의하면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물품·용역 계약시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(나라장터 등)에 수익계약 안내 공고를 해야 한다.
- 그러나 ○○○○복지관에서는 2014년, 2015년도 도시락배달 부식납품업체 선정 시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일반입찰에 의하여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복지관 게시판에만 입찰공

고문을 게시하여 접수한 3개 업체 중에서 복지관 직원들이 심사하여 2년 동안 동일한 업체인 □□□와 계약을 체결하였다.

▶▶ 처분요구 : 행정상 시정

5. 사업수익(실비이용료) 사용 부적정

- 2015년도 (인천광역시)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회복지관의 사업수행은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,
-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, 그 외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한다고 하면서, 시설 운영 개선 비용(시설비, 자산취득비, 시설장비유지비) 또는 법인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.
- 그러나 ○○○○복지관에서는 실비이용료 수익을 어린이날 행사 사전회의 식대(일반 어린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예산 있음), 복지관 안내판 제작 등에 사용하여 3건 853,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.

▶▶ 처분요구 : 행정상 주의

6. 공무용 차량 사용 부적정

-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르면 공무용 차량은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사용·관리하여야 하며, 개인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.
- 그러나 ○○○○복지관에서는 공무용 차량을 2015.7.14. 직원 회식 시 이동수단으로 사용하였으며, 사용목적을 사실대로 적시하지 않는 등 공무용 차량의 사용·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.

▶▶ 처분요구 : 행정상 주의